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300
----------	------

발의연월일 : 2021. 4. 5.

발 의 자 : 김승원 · 양정숙 · 이병훈
이상직 · 이상현 · 박상혁
서삼석 · 임호선 · 윤준병
유정주 · 박 정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재 택배기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성범죄 및 강력범죄가 있는 사람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반면, 배달대행기사(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취업제한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음. 코로나19로 배달대행업체(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이용이 증가하며 배달대행기사의 범죄를 우려하는 여론이 확대되고 있음.

지난 2019년 10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록된 “배달업체에서 성범죄자가 일을 못하도록 해주세요”라는 청원이 31,051명의 동의를 받았으며, 2021년 2월에는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서 배달대행기사가 여성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사건이 기사화되기도 하였음. 여론의 심각성을 반영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1인 가구 및 여성 가구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성범죄와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배달대행업 취업 제한을 검토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한 바 있음.

이에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종사할 수 없게 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및 영업점이 배달대행기사와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성범죄 및 강력범죄에 대한 범죄경력을 확인하게 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의 인증을 취소하게 함(안 제19조).
- 나.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될 수 없게 함(안 제19조의2제1항).
- 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및 영업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를 채용할 때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게 함(안 제19조의2제2항).
- 라. 국토부장관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에 성범죄자 및 강력범죄자와의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의 해지를 요구하게 함(안 제19조의2제3항).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7911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호 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과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하거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죄

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이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제1호 각 목의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1호 각 목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이 제1항제1호 각 목의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면 해당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에 그 사람과의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5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을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
2.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계약 해지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인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및 영업점은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이 법 시행 당시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에 대해 제19조의2제2항 개

정규정의 범죄경력을 확인하거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7911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인증의 취소) ① 국토교통 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 여야 한다. 1. ~ 2. (생략) <u><신설></u> 3. (생략) <u><신설></u>	법률 제17911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인증의 취소) ① ----- ----- ----- ----- ----- -----제1호부터 제3호까지----- ----- -----. 1. ~ 2. (현행과 같음) 3. 제1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과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19조의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 종사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 업을 하거나 소화물배송대행서 비스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죄

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
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또는 소
화물 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이하 “소화물배송
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이라 한
다)에 대하여 제1항제1호 각
목의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
항제1호 각 목의 범죄경력 조
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이 제1항제1호 각 목의 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소화물배
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의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
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소화물배
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제1항제
1호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위반
하면 해당 소화물배송대행서비

제51조(과태료) <신 설>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 · 징수한다.	<u>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에 그 사람과의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한다.</u>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u>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u> 2.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계약 해지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u>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u>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 ----- ----- -----.
--	--